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21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민병덕 · 이수진 · 정혜경
양부남 · 김문수 · 김현정
황명선 · 서영교 · 이광희
이언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으로,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조치명령의 이행을 기다릴 시 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 하개발사업자에 대신하여 필요 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u>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 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 전조치 등)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 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u>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 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u>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 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 전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 <u>아니</u> <u>하거나 그 명령의 이행을 기다</u> <u>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u> <u>는-----</u>

법」을 준용한다.

-----취하여야 한다.-----
-----.